

#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공고

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6조 제1항에 의거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 :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
2. 공고기간 : 2023. 2. 9.(목) ~ 2023. 2. 24.(금)
3. 공고대상

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공고사유
권*영	2006.01.13.	거창읍 거열로 90	2023.2.1.~2024.1.31.	거주불명

4. 신청장소 :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가능)

5. 발급안내

- 1)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  - 2)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.
    -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)
    -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·이장의 확인
    -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
  - 3) 준비해야 할 사진  
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(3.5cm x 4.5cm).  
다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.  
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4)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등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(등기우편으로 수령가능, 수수료 본인 부담)
6. 위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7. 문의전화 : 055-940-7264 / 담당자 : 오새해

2023. 2. 9.

거 창 읍 장

